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2022. 03. 28

애경케미칼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 적)

이 규정은 애경케미칼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 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393 조의 2 제 1 항, 제 542 조의 6 제 1 항, 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 - * 관련조문 : 증권거래법 제 191 조의 16 제 3 항, 제 54 조의 5 제 2 항
- ③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결격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고, 사외이사로서 기본적인 소양 및 능력을 갖춘 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1/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동 위원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
(관련조문) 상법 제 393 조의 2 제 3 항, 상법 제 542 조의 8 제 4 항

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,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 가진다. 단,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의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- 2. 사외이사 선임 원칙의 수립, 점검, 보완
- 3.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
- 4. 기타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(통지의무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위원회가 재의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. 단, 제1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(간사)

-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둔다.
- ② 위원회가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간사는 인사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4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